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665호 2025. 11. 17.(월)

선 람	기 관 의 장

조 례

- 예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예천군 조례 제2705호)
- 예천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예천군 조례 제2706호)
- 예천군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707호)
- 예천군 청소년 배움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예천군 조례 제2708호)
- 예천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예천군 조례 제2709호)
- 예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710호)

고 시

- 하천점용 허가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5-143호)

공 고

- 예천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공람공고(예천군 공고 제2025-1526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전화 650-6071)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1월 17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705호

예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군민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주민”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 및 임차인을 말한다.
2.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화재피해주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금액으로써 임시거처 임차료 및 주택화재 잔여물·폐기물 처리비용을 말한다.
3. “전소”, “반소”, “부분소”란 소방청 훈령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피해주민의 빠른 피해회복 및 일상복귀를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① 군수는 예천군에 주소를 둔 화재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회복 지원
2. 피해지원금 지원
3. 차량 및 장비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단체 등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5.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경우(10퍼센트 미만 소실)
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다만, 무허가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동일한 주택에 대한 화재가 거듭되어 이전에도 피해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5조(심리회복 지원)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상담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피해지원금 지원) ① 피해지원금은 임시거처 임차료 및 주택화재 잔여물·폐기물 처리비용으로 한정하여 산정하며 총 지급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전소: 700만원(건물의 70% 이상 소실되거나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 이하
2. 반소: 500만원(건물의 30% 이상 70% 미만이 소실된 것) 이하
3. 부분소: 300만원(전소, 반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하

② 제1항 각 호의 기준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다.

③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10일로 하고, 임차료 1일 지원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 국내 여비 지급표 제2호의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⑤ 주택화재 잔여물·폐기물 처리비용 지원금은 폐기물을 처리한 화재피해주민에게 실비로 지급한다.

제7조(장비지원) 화재 피해 현장 소재 읍·면장은 화재 피해 현장의 복구에 필요한 차량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피해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반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지원결정) ① 관할 읍·면장은 신청내용을 기초로 하여 화재피해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피해 규모 조사결과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금 지급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피해지원금 수령자격) 화재피해주민이 피해지원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상속인이 수령할 수 있다.

제11조(처리비용의 환수) ① 군수는 지원신청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며, 환수 시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금 지급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

1. 피해자 정보

주 소	경상북도 예천군 읍·면				
성 명		생년월일		성별	
가 족 수	명(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계좌번호	은 행 명:		계좌번호:		
연 락 처	전화번호:		휴대전화:		

2. 피해내역

화 재 일 시	
피해발생 위치	경상북도 예천군 읍·면
피해 시설명	
피 해 면 적	m ²
피 해 구 분	전소 / 반소 / 부분소
피 해 원 인	
「예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신청하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피해자와의 관계(본인,가족,이장) 예천군수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피해자)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 제출서류	①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 ② 통장사본 ③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④ 임시거처 및 폐기물처리비용 지급을 위한 증빙서류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거 공공 기관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거 공공 기관이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 정보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화재 피해지원금 지원신청 자격 요건과 관련한 제출 서류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계좌정보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화재 피해지원금 지원신청 자격 요건과 관련한 제출 서류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계좌정보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인·서명)	년 월 일 성명: (인·서명)

예 천 군 수 귀하

화재피해 규모 조사결과서

1. 화재피해자 정보

주 소	경상북도 예천군 읍/면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휴대전화: 유선전화:		

2. 화재피해 조사내용

① 화재발생 주소			
② 화재발생 일시			
③ 건축물대장 또는 재산세과세대장	면적:	m ²	
④ 소실면적	m ² /	%	
⑤ 피해금액	원		

※ ④, ⑤ 번은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해 기재

「예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화재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결과를 제출합니다.

조 사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인)

확 인 자

(읍·면장)(직인)

예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화재피해 지원금 지급대장

(단위: 천원)

[illegible]

◇제정이유

- 예천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군민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제2조)

- “피해지원금”이란 화재피해주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금액으로써 임시거처 임차료 및 주택화재 잔여물·폐기물 처리비용을 말함

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제4조)

- 지원대상 : 예천군에 주소를 둔 화재피해주민
- 지원내용 : 심리회복, 피해지원금, 차량 및 장비

다. 심리회복 지원(제5조)

라. 피해지원금 지원(제6조)

- 전소 : 700만원, 반소 : 500만원, 부분소 : 300만원

마. 장비지원(제7조)

- 화재 피해 복구에 필요한 차량 및 장비 지원

바.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절차(제8조~제9조)

-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
- 관할 읍·면장은 사실 확인 후 조사결과서를 군수에게 제출, 군수는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통지

사. 수령자격과 환수 절차(제10조~제11조)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1월 17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706호

예천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에 예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 방법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와 군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군민은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관내 약국, 보건소, 읍·면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경로당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 ① 군수는 관내 약국, 보건소, 읍·면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경로당 등에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수거함을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불용의약품 등을 수거하고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 ③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교육 홍보 및 수집·보관은 보건소장이 담당하고, 운반 및 처리는 폐기물처리 관련 부서장이 담당한다.

제6조(포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관리에 현저

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제1조 ~ 제2조)
- 군수 및 군민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3조 ~ 제4조)
-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사항(제5조)
- 포상에 관한 사항(제6조)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1월 17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707호

예천군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구비서류는 주민등록초본, 암 진단서, 가발구입 영수증 및 증빙자료, 통장사본이며 그 외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 지침에 의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시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병명		상병코드	
	지급계좌번호		은행/예금주	
	의료보장	[]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자 [] 기타		
신청인	성명		관계	
	전화번호			
신청내용	총구입비		신청금액	

위와 같이 암환자 가발구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예천군 보건소장 귀하

구비서류 : 서식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 1. 주민등록초본
- 2. 암 진단서
- 3.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환자용/가무원/보호자용) : 별지 7 및 7의1
- 4. 가발구입비 영수증
- 5. 통장사본

◇개정이유

-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가발 구입비 지원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여 신청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주요내용

-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구비서류 간소화(제4조제3호)**
 -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자”를 삭제하여 구비서류 간소화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청소년 배움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1월 17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708호

예천군 청소년 배움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이 관내 청소년에게 자기주도 학습 공간, 체험 활동, 학습지원, 급·간식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배움터”를 운영함으로써,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과 학습역량 증진을 도모하고, 가정의 양육부담 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 배움터”란 「청소년 기본법」 제48조의2에 따라 청소년의 방과 후 또는 여가 시간에 자기주도 학습과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천군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및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이용 대상) 청소년 배움터의 이용 대상은 예천군에 거주하거나 예천군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 시 군수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제4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 배움터가 효율

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 군수는 청소년 배움터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예천군 교육발전특구 시행계획에 이를 포함할 수 있다.

제6조(주요 기능) 청소년 배움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기주도 학습 및 학력 진단 지원
2. 온라인 학습 및 특기 적성 훈련 환경 제공
3. 진로 탐색 및 체험활동 운영
4. 자치활동 및 소통 공간 제공
5. 학부모 대상 정보 제공 및 상담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성장 지원 활동

제7조(운영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배움터 운영 지원
2.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 운영비
3. 이용 청소년 급식 지원
4. 운영 종사자 교육·훈련비
5. 기타 청소년 배움터 활성화를 위한 비용

제8조(위탁운영) 군수는 청소년 배움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종사자의 권익증진) 군수는 청소년 배움터 운영에 참여하는 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자문단 구성) 군수는 청소년 배움터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필요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 지역 청소년의 방과 후 자기주도학습, 진로탐색, 정서·건강 지원 등 전인적 성장 지원을 위한 통합형 학습지원 공간인 청소년 배움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천군의 교육복지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명시(제1조 ~ 제2조)

나. 운영 대상 및 운영계획, 주요기능 규정(제3조 ~ 제6조)

- 운영 대상 : 예천군 관내에 주소를 둔 청소년 및 예천군 관내 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 주요 기능 : 자기주도학습, 진로탐색, 체험활동 지원 등
- 군수의 운영책임 및 연도별 운영계획 수립 명시

다. 운영 지원 및 위탁운영 근거 마련(제7조 ~ 안 제8조)

예천군의회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1월 17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709호

예천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
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천군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예천군 사회복지협의
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단체와
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업무
3. 그 밖에 군수가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감독) ①군수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2024. 1. 2. 시행)됨에 따라 시·군·구 사회복지협회의 설립 근거 및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복지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제1조)

나. 군수의 책무 (제2조)

-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을 위한 군수의 책무 규정

다. 지원사업 및 예산지원 근거 마련(제3조, 제4조)

- 사회복지협회가 수행하는 업무 및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제5조)

- 사회복지협의회 업무에 대해 군수는 지도·감독 할 수 있음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1월 17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710호

예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제35조에 따른 예천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를 삭제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 또는 제3호에”를 “제4호에”로, “제2호 또는 제3호의”를 “제4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당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제33조 중 “30개”를 “15개”로 한다.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관내 주요 상권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유통망 확대와 「전통시장 특별법」에 근거한 보조사업 기회 제공을 위해 골목형상점가의 기준 및 지정 사항을 완화하여 관내 상권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제7장)
 -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서류 중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동의서 삭제 및 해당구역 지번과 면적 추가(제32조)
 -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 30개 → 15개로 완화(제33조)
 -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위원회 심의 절차 생략
(제31조, 제36조~제42조)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같은법 제33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예 천 군 수



구 분	하천점용허가
하 천 명	한천(지방하천)
점 용 자 주 소	경상북도 이통장연합회(회장 엄태봉) (경북 울진군 울진읍 대나리항길 41-6)
위 치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310-1번지
점용면적	8,696㎡
점용목적	토지의 점용
사업개요	2025년 경상북도 이통장 한마음대회
점용기간	2025년 11월 23일 ~ 2025년 11월 24일

예천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공람공고

예천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7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13, 제70조의14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17일

예 천 군 수

1. 주요 내용

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구 분	계획관리 지역	계		일반형			유도형(주거형)		
		개소	면적	개소	면적	비율	개소	면적	비율
예천군	135.05	660	108.66	650	107.94	99.3	10	0.72	0.7

나.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 기반시설의 계획에 관한 사항
- 건축물 용도계획, 건폐율 및 용적률 계획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주차시설 계획에 관한 사항
-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다. 관계도서 및 상세내용 : 게재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2. 공람기간 : 2025. 11. 17. ~ 2025. 12. 1.(14일간)

3.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예천군청 도시과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도시과(☎054-650-63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공람내용은 결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향후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서

사업명	예천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제출자	성명		연락처	
	주소			

제출 의견	
----------	--

예천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주민공람·공고
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